

| 신청기관 : 교육부

일본의 지방분권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입법현황 – 개정 지방행정교육법을 중심으로

김 잔 디

오사카대학교 초빙연구원

I. 들어가는 말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교육은 근대국가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집권 체제 하에 국가 정책으로서 진행되어 왔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후 민주화 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의 민주주의, 지방분권 등을 목표로 교육개혁이 행해져 왔다.

1947년 5월에 시행된 일본 헌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육에 있어서 기회 균등의 원칙을 명기하고 있다. 반면 동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여 아동의 교육의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에 대해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여 국가의 책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일본국민에게 권리로서의 측면과 의무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양자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교육의 기본을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1947년 3월에 시행되어 교육의 목적, 기회의 균등, 의무교육의 무상 등 일본 교육의 기본 이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제정 이후 약 70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으나 2006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동 개정에서는 종래의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개인의 존엄과 평화, 민주적 국가·사회의 형성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을 계승하고 일본인의 규범의식과 전통문화의 존중 등을 교육의 목표로 새롭게 설정했다.

교육기본법 외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학교교육법, 국립대학법인법, 교육행정에 관하여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행정법’으로 표기함), 교육재정에 관하여 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 시정촌립학교직원급여부담법, 교육직원에 관하여 교육직원면허법, 교육공무원특례법, 사회교육에 관하여 사회교육법, 도서관법, 박물관법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법률에 일본 교육제도의 근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⁰¹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진행될 지방분권에 맞춘 지방교육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참고가 되는 일본의 지방분권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행정교육법의 개요 및 최신 동향과 지방교육행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지방행정교육법의 개요

1. 지방행정교육법의 내용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제도의 핵심 내용에 대해 규정한 교육위원회법이 폐지된 후 제정된 지방교육행정법은 195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지방교육행정법 제정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의 선정 방법이 변경되었다. 즉 교육위원회법에 의하면 교육위원회 위원은 주민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었지만 지방교육행정법에서는 지방공동단체의 수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지방교육행정법은 일본의 도도부현, 시(특별구를 포함)정촌의 교육행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서 교육위원회의 설치,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직원 신분의 취급 기타 공공단체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의 기본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교육행정법은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한 교육 기회의 균등, 교육수준의 유지, 향상 및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와 적절한 역할분담 및 상호 협력 하에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서 명기하고 있다.

동법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동법의 취지, 기본 이념, 주요 시책

⁰¹ 小山永樹, “日本の教育行政と自治体の役割”, 分野別自治制度及びその運営に関する説明資料No.9, 自治体国際化協会, 2008, 1쪽 이하.

(大綱)의 책정, 종합교육회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위원회의 설치·조직·임명·임기·파면, 교육장·위원 및 회의, 교육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의사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주로 교육위원회 및 지방공공단체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위원회의 직무 권한 및 특례, 사무 처리의 법령 준거 및 위임, 교육에 관한 사무 관리 및 집행 현황의 점검 및 평가, 사립학교 사무에 대한 도도부현 위원회의 조언 및 원조, 교육재산의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교육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시정촌립 학교의 교직원 임용, 학교운영협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문부과학대신 및 교육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으로 문부과학대신 또는 도도부현 위원회의 지도, 조언 및 원조, 문부과학대신 및 교육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은 그 외의 규칙(雜則)으로 항고소송 등의 취급, 보건소와의 관계, 지정 도시에 관한 특례, 중등교육학교를 설치한 시정촌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교육위원회 제도

지방교육행정법의 많은 조항에서는 ‘교육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해 도도부현 및 시정촌 등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로 교육에 있어서 일반 행정으로부터 지방자치, 교육행정의 독립 등의 원리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학교의 설치·관리, 교직원의 인사 및 연수, 아동의 취학 및 학교의 조직편제, 교과서의 취급에 관한 사무 처리, 생애학습·사회교육사업의 실시, 도서관·박물관 등의 설치·관리, 문화재의 보호 및 활용, 문화사업의 실시, 스포츠 지도자의 육성 및 확보, 체육관 등 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교육위원회 제도를 통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육의 계속·안정성의 확보, 지역주민의 의향 반영을 실현하고 있다.⁰²

⁰²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참조, http://www.mext.go.jp/a_menu/chihou/05071301.htm, 최종검색일: 2018. 4. 22.

[표 1] 교육위원회의 설치 현황⁰³

	도도부현	시정촌등	시	특별구	정	촌	전부교육조합	공동설치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
교육위원회 수	47	1819	786	23	742	183	0	1	79	2
구성비 (%)	-	100	43.4	1.3	10.8	10.1	0.0	0.1	4.3	0.1

III. 지방행정교육법의 개정

1. 개정 배경 및 경위

(1) 배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제도는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도입된 이후 지방공공단체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반면 교육위원회의 필요성 및 활용성에 관하여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며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⁰⁴ 즉 1999년에는 교육에 있어서 지방자치 강화의 관점으로부터 교육장의 임명 승인 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해 2001년에는 교육위원의 구성의 다양화 및 교육위원회의 공개 원칙의 규정 등이 신설되었고 2004년에는 학교운영협의회가 제도화 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집단따돌림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대응이 문제가 되어 교육행정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보호자위원 임명의 의무화, 교육위원회의 점검·평가의 의무화, 국가의 관여 강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지방 분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제도의 폐지론이나 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지방공공단체의 판단에 맡기는 제도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으나 2007년 개정에서는 교육위원회제도를 유지하며 그 책임 체제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졌다.

그러던 중 오츠시(大津市)의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등 학생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하

03 2013년 5월 1일 기준,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참조,
http://www.mext.go.jp/a_menu/chihou/05071301.htm, 최종검색일: 2018. 4. 22.

04 자세한 내용은 青木栄一, 地方分権と教育行政―少人数学級編成の政策過程, 劇草書房, 2013, 7면 이하.

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의 신속·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계기로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위원회의 문제가 아닌 현행의 교육위원회제도에 있어서 ① 교육위원회와 교육장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② 비상근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로는 집단따돌림 등의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③ 지역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④ 지방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는 등과 같은 문제가 명확해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⁰⁵

(2) 개정의 경위

수상 관저에 설치된 교육재생실행회의에서 집단따돌림에 관한 제1차 제언에 이어 교육위원회제도개혁에 관한 논의가 개시되었고, 제2차 제언에 있어서 첫째, 교육행정 책임체제의 명확화를 위해 수장이 의회동의를 얻어 직접 임면(任免)하는 교육장을 책임자로 하고, 둘째,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변경하여 지역의 바람직한 모습이나 기본 방침 등에 관하여 심의하여 교육장에게 방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장에 의한 사무의 집행현황을 검토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과 취급방법, 교육위원의 임명 방법, 교육장의 파면 요건 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교육심의회에 맡겨지게 되었다.

중앙교육협의회의 논의에서는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을 수장으로 하는가 혹은 계속하여 교육위원회로 하는가가 최대의 논점이었다. 즉 교육재생실행협의가 주장한 대로 교육장을 교육행정의 책임자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①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을 수장으로 하고 보조기관으로 교육부장을 두는 방법, ②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을 계속하여 교육위원으로 하고 보조기관으로서 교육장을 두는 방법이 검토되었다. 중앙교육협의회의 논의에서는 주로 수장, 경제계, 행정학자가 수장의 책임을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①의 방법을, 교육관계자, 교육행정학자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계속성, 안정성의 관점으로부터 ②의 방법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중앙교육심의회는 거의 양론병기에 가까운 답신을 하였다⁰⁶.

문부과학성은 통상적으로 중앙교육협의회의 답신을 토대로 법 개정 작업을 하지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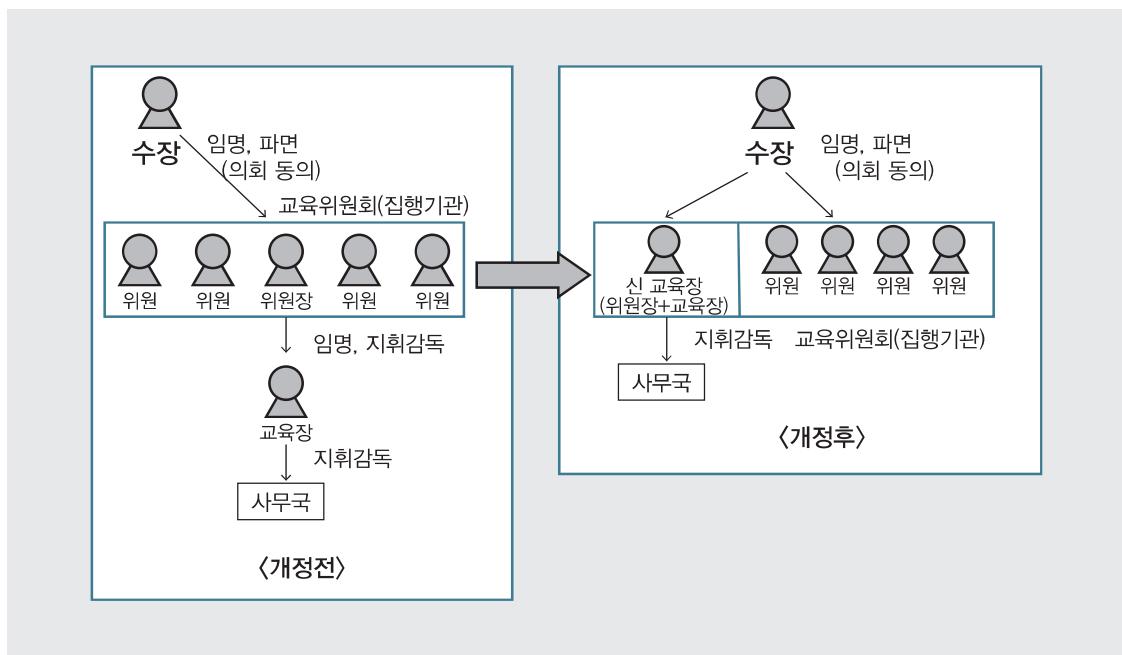
05 石川仙太郎, “新たな教育委員会制度について”,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初等中等教育企画課, 2015, 1면 이하.

06 구체적으로는 ①의 방법을 개혁안으로 하면서 동시에 ②의 방법을 별안(別案)으로 하였다.

양교육심의회의 답신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못했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자민당 내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자민당의 안건을 정리하여 여당과 협의하였다. 여당 협의에서는 자민당의 안건을 토대로 합의체로서의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중시하는 관점을 수정하고 교육장에 대한 교육위원회에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2014년 4월 4일 개정 법안이 각의 결정되고 같은 해 6월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다수로 가결·성립하여 같은 달 20일에 공포되었다.

2. 개정내용⁰⁷

[그림 1] 지방교육행정법 개정 전후 비교⁰⁸



(1) 신교육장의 설치

현행제도에서는 교육위원회 중에서 위원회의 주재자(主宰者)인 위원장과 사무의 통괄자인 교육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누가 책임자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새로운 제도는 양자를 통합하여 새로운 책임자(신(新)교육장)을 두었고, 신교육장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회무(會

⁰⁷ 개정내용에 관해서는 文部科学省, “地方教育行政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概要’, 2015, 1면 이하 참조.

¹⁰⁸ 文部科学省，“地方教育行政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概要(参考資料2)，2015 稠。

務)를 총리(總理)하고, 교육위원회를 대표한다'고 하였다(동법 제13조 제1항).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것(개정법 제12조 제3항) 및 현행법에 의한 교육장의 직무인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현행법 제17조 제1항)',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하는 것(개정법 제20조 제1항)을 의미한다. 이로써 교육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가 신교육장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또한 과거에는 수장이 교육위원회를 임명하고, 위원장이나 교육장은 교육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임명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수장이 교육장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임면(任免)한다고 개정하여(개정법 제4조 제1항), 수장의 임면 책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2) 교육위원에 의한 감시 기능 강화 및 회의의 투명화

동법 개정에 의해 신교육장이 교육위원회의 대표자가 되었고 다른 교육위원과 비교하여 그 권한이 확대되었다. 반면 신교육장은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의 보조기관이 아닌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며 대표자이기 때문에 교육장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은 법률상 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전과 동일하게 교육위원회는 합의체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토대로 사무를 담당하는 입장인 것에는 변화가 없으며, 개정 후에도 교육위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교육장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교육위원 정수 1/3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청구(제14조 제2항) 및 교육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관리, 집행현황의 보고의무(제25조 제3항)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회의의 투명화 및 주민에 의한 검토를 위해 회의 의사록의 작성, 공표를 노력 의무로 하였다(개정법 제14조 제9항). 노력의무에 그치도록 규정한 것은 소규모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사무 부담을 고려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권한이 확대된 교육장에 대한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교육위원회의 심의의 활성화가 도모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3) 종합교육회의의 설치

과거 수장은 교육위원의 임명 및 예산의 편성·집행, 조례 제출권 등 교육행정에 관한 권리가 있었으나 행정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교육에 관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에 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더욱이 교육위원회도 수장의 의사를 충분히 청취할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수장과 교육위원회가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고, 지역의 교육 문제나 정보를 공유하고 민의를 반영한 교육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지방공공행정단체에 종합교육회의를 설치하게 되었다. 종합교육회의는 결정기관이 아니며 수장과 교육위원회의 대등한 집행기관 사이의 협의·조정을 담당한다. 수장과 교육위원회는 종합교육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고, 합의한 방침에 따라 소관하는 사무를 집행하게 되었다.

또한 종합교육회의에서의 협의·조정사항은 ① 교육행정의 책정, ② 교육의 조건정비 등 중점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③ 아동, 학생 등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 긴급한 경우의 조치(개정법 제1조의 4 제1항)로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위원회제도를 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교과서의 선택, 교직원 인사 등 특히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반면 교과서 선택의 방침, 교직원 인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예산 등 수장의 권한과 무관한 사항도 있지만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협의할 수 있다. 종합교육회의는 어디까지 협의의 장이며 교육위원회의 집행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장이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정을 요하지 않은 사항의 집행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및 수장이 각각 판단하게 된다.

(4) 주요 시책의 책정

수장과 교육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장이 교육행정에 연대 책임을 지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장은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교육 학술 및 문화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주요시책을 책정한다(개정법 제1조의 3 제1항).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교육, 학술 및 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 시책은 지방공공단체의 교육, 학술 및 문화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에 관하여 그 목표나 시책의 근본이 되는 방침을 정하는 것이며 상세한 시책에 관하여 책정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시책의 기재사항으로는 학교의 통폐합, 소인수 교육의 추진, 종합적인 방과 후 대책, 유치원·보육원 등을 통한 유아교육·보호의 충실 등 수장의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한 목표 및 기본 방침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수장의 임기가 4년이고, 국가 교육진흥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을 고려하여 4년~5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시책의 책정권은 수장에게 있지만 교육행정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교육회의에서 교육위원회와 충분히 협의·조정할 것이 요구된다. 수장이 조정된 사항을 주요 시책에 기재한 경우 수장 및 교육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존중할 의무가 발생하며(개정법 제1조의 4 제8항), 책정된 주요 시책 하에 각각 관할하는 사무를 집행하게 된다. 반면 수장이 교육위원회와 조정하지 않은 사항을 주요시책에 기재하더라도 교육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존중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교육에 관한 사무 집행 권한을 토대로 교육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5) 국가의 관여

개정 전 법률에 의하면 집단따돌림에 의한 자살 등의 사안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대응이 부적절한 경우 문부과학 대신이 교육위원회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츠시에서 발생한 집단따돌림에 의한 자살사안에 관하여 ‘아동, 학생 등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해’라는 현행법의 요건에서는 해당아동, 학생 등이 자살한 후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발동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사건발생 후에 동종의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시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의 개정은 어디까지는 요건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이며, 요건을 추가하여 국가의 관여를 강화한 것은 아니다.

IV. 마치며

일본의 교육행정은 국가가 정한 기본적인 구조 및 재정적 보장 하에 도도부현, 시정촌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다.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통해 교육제도를 충실히 발전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위원회는 지방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교육은 현재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즉 아동의 학습 의욕 저하, 규범의식 및 도덕심 저하 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에 대한 대응이나 취업, 취학, 직업훈련 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 대한 대응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국민 대다수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교육관의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사회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보다 충실히 행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의 요청이나 교육행정을 둘러싼 사회 현상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시작으로 한 교육기관의 바람직한 모습뿐 아니라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와 학교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육행정의 실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따른다.

교육위원회제도를 시작으로 한 지방교육행정의 이상적인 모습에 관해서는 1998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을 토대로 현재 그 취지에 따른 개혁이 각 지방자치체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지방자치체의 자립성,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전체에서 지방분권개혁이 추진됨과 동시에 지방자치체의 행정 능력 향상이나 재정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정촌의 합병이 급속히 진전되는 등 지방자치체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방의 교육행정체제가 강화되며 교육에 충분한 재정적 조치를 확보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⁰⁹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의향을 반영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도 보다 강조될 것이며 이에 앞으로도 교육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⁰⁹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참조,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0/toushin/attach/1382462.htm, 최종 검색일: 2018년 4월 23일.

참고문헌

文部科学省, “‘地方教育行政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要”, 2015

青木栄一, 地方分権と教育行政—少人数学級編成の政策過程, 勁草書房, 2013

小山永樹, “日本の教育行政と自治体の役割”, 分野別自治制度及びその運営に関する説明資料No.9, 自治
体国際化協会, 2008.

石川仙太郎, “新たな教育委員会制度について”,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初等中等教育企画課, 2015